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



2021년 1월 21일

군포도시공사 내규 제43호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인권경영선언)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인권경영선언)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별지 제1호 서식” 인권경영선언문과 “별지 제2호 서식” 노사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1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④ 위원의 역할과 의무를 대신하는 대리인의 대리참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위임장 등 대리참석 관련 문서의 효력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제32조(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금지), 제33조(직장 내 4대폭력 예방), 제34조(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

제32조, 제33조, 제34조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직장 내의 성희롱·성폭력 금지

제32조(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금지) 사장,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등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인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직장 내 4대폭력 예방) ①사장은 직장 내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4대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에서 4대폭력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직장 내에서 4대폭력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 ①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대폭력에 관한 법령
2. 4대폭력 예방에 대한 공사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4대폭력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기타 4대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직장 내 4대폭력 교육의 방법은 서면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제13조 관련> <제정 2020.00.00.>

군포도시공사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우리는 인류 보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을 추구하고 노사 화합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씨앗으로 삼아 ‘군포시 새로운 100년을 선도’ 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사 인권경영선언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우선, 사람중심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인권에 대한 규범 및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헌법상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 및 행복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권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부
입 안 자	직 성 명	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
	담당 성명 (전화번호)	황 기 성 (390-7606)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3조(인권경영선언)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별지 제1호 서식” <u>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u>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제13조(인권경영선언) ----- ----- ----- <u>인권경영선언문과 “별지 제2호 서식” 노사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u> ----- -----.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의 역할과 의무를 대신하는 대리인의 대리참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위임장 등 대리참석 관련 문서의 효력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u>	
<신설>(제32조 ~ 34조)	<신설> 제32조(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금지) <u>사장,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을 매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인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33조(직장 내 4대폭력 예방) ① <u>사장은 직장 내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4대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② <u>직장 내에서 4대폭력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u>	

	야 한다. ③사장은 직장 내에서 4대폭력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 ①직장 내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대폭력에 관한 법령 2. 4대폭력 예방에 대한 공사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4대폭력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기타 4대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직장 내 4대폭력 교육의 방법은 서면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른다.	
--	---	--

<현행>

없음

<신설>

[별지 제2호서식] <제13조 관련> <제정 2020.00.00.>

군포도시공사 노사 인권경영선언문

우리는 인류 보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을 추구하고 노사 화합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씨앗으로 삼아 ‘군포시 새로운 100년을 선도’ 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사 인권경영선언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우선, 사람중심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인권에 대한 규범 및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상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 및 행복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권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